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 
제271회 임시회 (2024. 10. 1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
#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행정건설위원회  
전문위원 권 하 나

### 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4-126
- 나. 제 출 자: 마포구청장
- 다. 제출일자: 2024년 9월 27일(금)
- 라. 위원회 회부일자: 2024년 9월 30일(월)

### 2. 제출사유

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'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'를 설치·운영하기 위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윈드오케스트라 구성 및 운영(안 제3조~제4조)
- 다. 지휘자 및 단원의 자격 및 위·해촉(안 제5조~제8조)
- 라. 수탁자 의무 및 지도·감독 등(안 제9조~제12조)

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4. 8. 29. ~ 9. 18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반영

성별영향평가 전문가 의견	조례안 제2조와 관련하여,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때 '문화취약계층'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함.
반영	제2조(기능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(이하 "오케스트라"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3.(생략) ② 구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케스트라의 활동이 관내 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참고사항	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5조의3(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 5. 검토보고

### 가. 제정 목적

- 동 조례 제정안은 2024년 9월 2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, 주요 내용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을 위하여 '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윈드오케스트라'를 설치·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나. 조문 검토

- 본 제정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본칙 12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, 윈드오케스트라 구성 및 운영(안 제3조 및 제4조), 단장의 직무(안 제5조), 자격 및 모집, 위촉과 해촉(안 제6조~제8조),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·감독(안 제9조~제10조), 위탁의 취소(안 제11조), 경비의 지원(안 제12조) 등을 규정함.

### 〈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내용〉

조(제목)	내용
제1조(목적), 제2조(기능)	- 목적: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마포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육성 - 기능: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, 구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생활 제공 등
제3조(구성), 제4조(운영)	- 단장, 지휘자, 단원 등 구성하여 50인 이내 정원에 관한 사항 -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, 마포문화재단 위탁 등에 관한 사항
제5조(단장의 직무)	- 사무 총괄, 지휘자 및 단원의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제6조(자격 및 모집)	- 지휘자, 단원 등의 자격에 관한 사항
제7조(위촉), 제8조(해촉)	- 지휘자, 단원의 위촉 기간(2년)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 - 구청장이 지휘자 및 단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항 등
제9조(수탁자의 의무)	- 수탁자의 운영 종합계획 수립·제출, 실적·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제10조(지도·감독)	-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, 이에 따를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
제11조(위탁의 취소)	- 의무 위반 등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
제12조(경비의 지원)	- 무보수 원칙, 필요한 경비 및 사례비 지급에 관한 사항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의하였고,
- 안 제3조는 윈드오케스트라<sup>1)</sup>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, 지휘자, 단원 등 구성하고, 50인 이내 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.

1) 윈드오케스트라: 오케스트라에서 관악기로 이루어진 섹션을 지칭하는 용어. 혹은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관악기 자체를 지칭할 때도 사용한다.

- 안 제4조는 윈드오케스트라운영에 관한 사항으로, 안 제4조제2항에서 마포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.
- 이는 현재 마포구립 합창단, 문화예술 단체 지원 등의 실질적 운영을 마포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마포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6조는 지휘자 및 단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  - 지휘자는 “음악분야 전공한 사람 중”으로 전문성을 강조한 사항으로 지휘자의 자격에 대하여는 전공자 선발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오케스트라의 자질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  - 단원은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음악 및 악기에 재능 있는 사람으로 참여의 폭을 넓혔음.
- 안 제7조 및 제8조는 지휘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·연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  - 지휘자, 단원의 임기를 “2년”으로 정하고,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둔 점은 오케스트라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, 지도·감독, 위탁의 취소,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음.

#### 다. 종합 검토 결과

- 이와 같이 검토한 바, 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윈드오케스트라 운영 및 위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

(시책과 권장) 취지에 부합<sup>2)</sup>하며,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 
없음.

- 아울러, 동 조례 제정을 통해 마포구민에게 오케스트라에 대해 다양하고  
수준 높은 연주활동 기회 제공, 문화·예술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활  
동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---

2) 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 
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  
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붙임 1****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**

구분	조례명	기관명	제·개정	시행일자
1	곡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전라남도 곡성군	제정	2020. 7. 2.
2	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부산광역시 영도구	일부개정	2023. 1. 1.
3	부산광역시 중구 실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부산광역시 중구	제정	2023. 12. 8.
4	서울특별시 구로구립 꿈의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서울특별시 구로구	일부개정	2023. 12. 28.
5	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서울특별시 구로구	일부개정	2023. 6. 15.
6	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서울특별시 구로구	일부개정	2023. 12. 28.
7	서울특별시 동대문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조례	서울특별시 동대문구	일부개정	2023. 4. 13.
8	음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충청북도 음성군	제정	2019. 5. 7.
9	홍성군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충청남도 홍성군	일부개정	2021. 12. 30.
10	화천군 윈드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	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	일부개정	2024. 5. 7.

**■ 「문화예술진흥법」**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제15조의3(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